

第303回國會  
(定期會)

# 國土海洋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1月17日(木)

場 所 國土海洋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沿岸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17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1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건
175.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17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
18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1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1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2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9.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審査된案件**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8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춘진 · 송영길 · 양승조 · 이시종 · 최문순 · 박은수 · 변재일 · 김성곤 · 강창일 · 전현희 · 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 18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김창수 · 김용구 · 박선영 · 임영호 · 안민석 · 이영애 · 황우여 · 정하균 · 권선택 · 이주영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18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고승덕 · 김정권 · 손범규 · 유성엽 · 이해봉 · 김효재 · 유승민 · 김소남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 18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우남 · 강기정 · 이용섭 · 김춘진 · 송영길 · 박은수 · 김상희 · 이미경 · 박주선 · 김종률 · 김영진 · 조영택 의원 발의)(계속) ..... 18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용구 · 이한성 · 김재균 · 정병국 · 양승조 · 우제창 · 김부겸 · 강기정 · 주승용 · 최철국 · 조정식 · 조승수 · 이해봉 · 김춘진 · 이종혁 · 오제세 · 김유정 · 박기춘 · 이시종 · 박순자 · 최규성 · 이석현 · 김성곤 · 강창일 · 서갑원 · 원혜영 · 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 18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 · 강창일 · 김재균 · 김춘진 · 서종표 · 송민순 · 신낙균 · 이범관 · 이석현 · 정동영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18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강운태 · 이한성 · 황영철 · 신학용 · 유정

- 현·조원진·강성천·현기환·이종혁·김성식·고승덕·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 18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정양석·고승덕·김영진·이찬열·이한성·이명수·이성현·홍희덕·권선택·이혜훈·나성린·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18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이명수·임영호·김창수·이상민·김용구·김충환·권선택·정갑윤·박선영·유기준·이성현 의원 발의) ..... 18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정희수·김성수·허천·이춘식·박상은·유일호·김광림·나성린·정양석·이사철·허태열·유승민·원유철·조해진·유정현·권영진·강성천·차명진·주호영·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18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승규·권성동·김성동·손숙미·안형환·원희목·조문환·조진래·조해진 의원 발의) ..... 18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정권·이한성·김성수·김성태·유재중·이명수·김을동·정의화·김정훈 의원 발의) ..... 18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상수·유성엽·강석호·이정선·이화수·김성태·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 18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송영선·윤석용·강성천·이한성·정미경·김정훈·김성수·강석호·안상수·김정권·김태원·신상진·정양석·박종희·김효재·이화수·박준선·안홍준·나경원·허범도·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18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김을동·노철래·우윤근·박종근·정영희·서창원·정하균·손범규·오제세·안효대·김옥이·권영진 의원 발의)(계속) ..... 19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 19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김용구·최철국·류근찬·이진삼·우윤근·임영호·심대평·박민식·김우남·김창수·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 19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박준선·안홍준·윤석용·이정선·김학용·신성범·김성수·허원제·조윤선·정진섭·이병석·조진형 의원 발의) ..... 19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윤석용·안효대·김낙성·노철래·권경석·허천·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19
2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신성범·윤석용·권경석·주승용·박준선·김대호·이명수·정수성·조원진 의원 발의) ..... 19
2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상수·유성엽·강석호·이정선·이화수·김성태·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 19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성수·임동규·정병국·백성운·정옥임·이한성·손범규·손숙미·양정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3)(계속) ..... 19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김옥이·강석호·이정선·원희목·이화수·김성태·임동규·정의화·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 19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태원·유기준·김옥이·이인기·윤상현·허태열·박준선·이한성·홍장표·김성수 의원 발의) ..... 19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유성엽·김종률·김상희·백재현·최문순·최철국·김영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19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성태·김옥이·고승덕·안상수·윤석용·손범규·안효대·정태근·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 19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안효대·이한성·임두성·원희목·박대해·배은희·이명규·강성천·손숙미 의원 발의)(계속) ..... 19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정병국·김성

- 조·신학용·김성태·손숙미·유재중·김성수·이윤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5)(계속) ..... 1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한성·안상수·김성태·김성조·주성영·이인기·남경필·김용태·정병국·김세연·조전혁 의원 발의)(계속) .... 19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김소남·임동규·노철래·황영철·김선동·권성동·조문환·진영·권영세·김성희·박준선·김성조·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계속) ..... 19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신영수·김정권·김소남·강길부·임동규·신지호·정해결·강석호·성윤환 의원 발의)(계속) ..... 19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유재중·김선동·이한성·김성수·박대해·현경병·김금래·손숙미·최경희·강명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6)(계속) ..... 19
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안규백·백재현·이낙연·김충조·강창일·김희철·박상돈·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19
3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이미경·김성순·강창일·조정식·최규식·이시중·박영선·김성곤·이용섭·전병헌·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19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김춘진·곽정숙·홍희덕·유성엽·문국현·김희철·강기갑·이정희·이용경 의원 발의)(계속) ..... 19
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0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임두성·정희수·김희철·정갑윤·강길부·남경필·이윤성·김재경·최병국 의원 발의)(계속) ..... 20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윤진식·김학송·김광림·변웅전·이인제·이한성·이낙연·장윤석·성윤환 의원 발의) ..... 20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노철래·송민순·강창일·송영길·이춘석·이경재·송훈석·유성엽·김희철·신학용·류근찬·박종희·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 20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재윤·변재일·심대평·유성엽·이정희·이진삼·조승수·최인기·최철국·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0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정의화·송광호·김정훈·장제원·김동성·박보환·신성범·조전혁·성윤환·서상기·조원진·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 20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이한성·윤석용·유성엽·김호연·김소남·김금래·원희목·주성영·정희수·박민식·현기환·김광림 의원 발의) ..... 20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동철·김부겸·김재균·김재윤·백재현·양승조·오제세·유선호·이용섭·이종걸·이찬열·전병헌·전현희·전혜숙·조경태·조정식·천정배·최규성·최종원 의원 발의) ..... 20
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류근찬·김창수·임영호·이은재·심대평·권선택·김충환·김용구·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20
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이한성·이인기·황우여·유기준·원유철·김태원·홍사덕·김을동·서상기·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 20
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최철국·이명수·김창수·임영호·류근찬·최인기·박선영·김용구·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 20
4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



- 상돈 · 변웅전 · 류근찬 · 임영호 · 권선택 · 이명수 · 김용구 · 박선영 · 이진삼 · 심대평 · 이재선 · 김낙성 · 이영애 · 이회창 · 조순형 · 이용희 · 김창수 · 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 20
4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신영수 · 진성호 · 안홍준 · 이화수 · 유기준 · 안상수 · 손범규 · 김충조 · 이해봉 · 이정선 · 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20
5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이찬열 · 유선호 · 강창일 · 강기정 · 김재균 · 김영록 · 박기춘 · 김재윤 · 김효석 · 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20
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5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강창일 · 양정래 · 김성수 · 정영희 · 이한성 · 원혜영 · 이화수 · 송영길 · 김소남 · 이군현 · 이성현 · 정몽준 · 최영희 · 박영아 · 임동규 · 강성중 · 고승덕 · 김학용 · 이강래 · 이한구 · 김금래 · 주호영 · 김부겸 · 우윤근 · 김기현 · 전병헌 · 변재일 · 이해봉 · 김선동 · 주광덕 · 김영진 · 정해결 · 신상진 · 허범도 · 김낙성 · 최규식 · 김태원 · 송훈석 · 강석호 · 윤상현 · 김성순 · 조경태 · 김성곤 · 윤두환 · 김무성 · 유기준 · 우제창 · 이낙연 · 신낙균 · 윤영 · 서상기 · 강기정 · 공성진 · 김학송 · 박진 · 이병석 · 이광재 · 안경률 · 김용구 · 조해진 · 조진래 · 권경석 · 유정복 · 최규성 · 안홍준 · 최규식 · 서종표 · 이애주 · 김상희 · 김옥이 · 최문순 · 강명순 · 여상규 · 황영철 · 노영민 · 이석현 · 신학용 · 이명규 · 김영록 · 박대해 · 이용희 · 이춘석 · 박민식 · 이인제 · 최인기 · 조정식 · 허원제 · 정진석 · 이윤석 · 조영택 · 박영선 · 강봉균 · 이종혁 · 이정선 · 유선호 · 주승용 · 양승조 · 신지호 · 안규백 · 김성태 · 황우여 · 이사철 · 이범래 · 원유철 · 김춘진 · 강기갑 · 정진섭 · 백재현 · 문희상 · 정장선 · 전현희 · 김충조 · 백성운 · 허태열 · 이철우 · 정양석 · 박상은 · 김광림 · 김성식 · 김성조 · 권택기 · 박준선 · 권영길 · 조전혁 · 손범규 · 정병국 · 김용태 · 전여옥 · 유정현 · 권영진 · 장윤석 · 윤석용 · 진수희 · 나경원 · 박종희 · 조배숙 · 차명진 · 서갑원 · 최철국 · 조윤선 · 장광근 · 이미경 · 김을동 · 정옥임 · 성운환 · 강용석 · 박기춘 · 강운태 · 박상돈 · 정갑윤 · 정희수 · 홍재형 · 안효대 · 이영애 · 정미경 · 김세연 · 박지원 · 권선택 · 최옥철 · 김진표 · 이학재 · 진성호 · 장제원 · 강승규 · 이진복 · 신성범 · 송광호 · 임영호 · 홍사덕 · 현기환 · 김태환 · 이시종 · 임혜규 · 장세환 · 유승민 · 박종근 · 박주선 · 조원진 · 이경재 · 이윤성 · 김동성 · 김정훈 · 유성엽 · 김영우 · 유재중 · 서청원 · 이용삼 · 정의화 · 김효재 · 정태근 · 손숙미 · 배영식 · 고홍길 · 배은희 · 김재윤 · 천정배 · 현경병 · 박보환 · 안상수 · 이명수 · 이상민 · 홍정욱 · 조진형 · 서병수 · 이법관 · 최재성 · 백원우 · 주성영 · 이계진 · 김장수 · 황진하 · 이춘식 · 나성린 · 홍장표 · 구상찬 · 김동철 · 홍일표 · 이재선 · 김재균 · 허천 · 김성희 · 유일호 · 김우남 · 이종걸 · 김충환 · 원희룡 · 강길부 · 김종률 · 정두언 · 문학진 · 김희철 · 이종구 · 최병국 · 오제세 · 최경환 · 임태희 · 이혜훈 · 김창수 · 변웅전 · 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 20
5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 · 이한성 · 안상수 · 김성태 · 김성조 · 주성영 · 이인기 · 남경필 · 김용태 · 정병국 · 김세연 · 조전혁 의원 발의)(계속) ..... 21
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안효대 · 현경병 · 유재중 · 이인기 · 김태원 · 강길부 · 이한성 · 이진복 · 노철래 · 최병국 · 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21
5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이한성 · 김기현 · 이윤석 · 유성엽 · 윤영 · 김세연 · 김정훈 · 안효대 · 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 21
5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 · 이한성 · 이진삼 · 김용구 · 이명수 · 이철우 · 김호연 · 심대평 · 유정현 · 권영진 의원 발의) ..... 21
5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원유철 · 이사철 · 이인기 · 이한성 · 이두아 · 차명진 · 김태원 · 정병국 · 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 21
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5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이한성 · 임영호 · 유기

	준·유승민·배영식·현기환·안효대·이인기·김성태·김종률·정갑윤·최구식·이윤석·김세연·최연희·박민식·정해걸·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	21
6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우윤근·최철국·유원일·최문순·김성곤·조승수·조영택·문학진·이찬열·전현희·백원우·양승조·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21
6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1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세연·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 의원 발의)(계속) .....	21
6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오제세·윤진식·정범구·이인제·노영민·변재일·백성운·이학재·정의화·정수성·최구식·최규성·홍재형·장제원·조원진·장윤석·현기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30) .....	21
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6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박병석·양승조·이시중·노영민·홍재형·변재일·김종률·박은수·백원우·전현희·오제세 의원 발의) .....	22
6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심재철·이정선·김성희·강용석·김동성·강성천·이애주·배은희·이춘식 의원 발의) .....	22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2
6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강기정·이용섭·최규식·변재일·최영희·이종걸·유선호·양승조·김진표·김동철·조영택·강기갑·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22
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김재균·오제세·김성곤·조영택·백재현·강창일·이찬열·박선숙·송민순 의원 발의) .....	22
7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이한성·이인기·손범규·정해걸·신상진·이해봉·임동규·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	22
7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현·박선영·송훈석·윤상일·이종혁·서상기·김혜성 의원 발의)(계속) .....	22
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이정선·정영희·윤영·정희수·권성동·장제원·박우순·한기호·송훈석 의원 발의) .....	22
7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현·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계속) .....	22
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경재·정해걸·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현·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	22
7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7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7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조경태 · 이윤석 · 이성남 · 김성곤 · 김재균 · 강기갑 · 유원일 · 이용희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22
8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강기갑 · 권영길 · 이정희 · 홍희덕 · 박은수 · 양승조 · 유성엽 · 유원일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22
8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한성 · 유기준 · 황우여 · 강길부 · 안효대 · 김세연 · 박순자 · 허원제 · 김충환 의원 발의)(계속) ..... 22
8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정권 · 최철국 · 전현희 · 이춘석 · 우윤근 · 박은수 · 노영민 · 김재균 · 김동철 · 박상돈 · 양승조 · 김성곤 · 이용섭 · 강창일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2
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 · 권영진 · 김정권 · 김태원 · 송광호 · 유성엽 · 윤석용 · 윤진식 · 이낙연 · 이사철 · 이학재 · 이한성 · 정양석 · 정해걸 · 홍정욱 의원 발의) ..... 22
86.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손범규 · 장제원 · 유정현 · 원유철 · 신지호 · 김소남 · 이범래 · 권경석 · 김성조 · 이은재 · 강기정 · 김유정 · 김충조 · 이명수 · 최인기 · 이용삼 · 이한성 · 정갑윤 · 이명규 · 정해걸 · 김정권 · 김성수 · 원희룡 · 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22
87.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김옥이 · 이종혁 · 이한성 · 김영진 · 김정권 · 유성엽 · 정옥임 · 이두아 · 신상진 · 김성태 · 신학용 · 정해걸 · 김태원 · 김성순 · 송영선 · 조운선 · 이명규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2
8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 23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91.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490)(계속) ..... 23
92.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31)(계속) ..... 23
9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 23
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현경병 · 양승조 · 배은희 · 김장수 · 이애주 · 유기준 · 윤상현 · 안상수 · 이정현 · 박기춘 · 이성현 · 강성천 · 신영수 · 진성호 · 유성엽 · 김성곤 · 정병국 · 진영 · 정미경 · 심재철 · 이두아 의원 발의)(계속) ..... 23
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무성 · 윤석용 · 이윤성 · 정해걸 · 윤영 · 임동규 · 한선교 · 이성현 · 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 23
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 · 김용구 · 안효대 · 유기준 · 노철래 · 장광근 · 김무성 · 정희수 · 허천 · 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3
9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명수 · 이한성 · 이해봉 · 김유정 · 이인기 · 김성태 · 김태원 · 김성수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23
9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손범규 · 강기갑 · 김정권 · 이정선 · 강용석 · 한선교 · 안효대 · 김호연 · 유기준 · 김태원 · 강길부 · 임해규 · 황우여 · 김소남 · 이한성 · 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 23
10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 최규식 · 신영수 · 조배숙 · 이한성 · 이정선 · 신상진 · 한선교 · 김기현 · 김충환 · 김성곤 · 임영호 · 최경희 · 김무성 의원 발의) ..... 23
10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10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조경태 · 이윤석 · 이성남 · 김성곤 · 김재균 · 강기갑 · 유원일 · 이용희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23
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강기갑 · 권영길 · 박은수 · 양승조 · 유성엽 · 유원일 · 이한성 · 이정희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3
1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 · 유기준 · 윤석용 · 이춘식 · 장윤석 · 정미경 · 이한성 · 심대평 · 이재선 · 정영희 의원 발의) .....	23
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손숙미 · 전해숙 · 유기준 · 유재중 · 김호연 · 김금래 · 백성운 · 김성태 · 홍영표 · 신영수 · 황영철 · 김소남 · 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23
10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박상은 · 정해걸 · 이영애 · 박준선 · 홍준표 · 이한성 · 구상찬 · 김혜성 · 김정 의원 발의)(계속) .....	23
10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박상은 · 정해걸 · 이영애 · 박준선 · 홍준표 · 이한성 · 구상찬 · 김혜성 · 김정 의원 발의)(계속) .....	23
10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한성 · 김소남 · 김정권 · 임두성 · 이해봉 · 김성조 · 김효재 · 정희수 · 강석호 · 이혜훈 · 구본철 · 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	23
11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유기준 · 김무성 · 황우여 · 이해봉 · 한선교 · 김효재 · 안홍준 · 신영수 · 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23
1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 · 최병국 · 윤영 · 정희수 · 최연희 · 이한성 · 최구식 · 박상은 · 신영수 · 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	23
11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김우남 · 오제세 · 강창일 · 유선호 · 이찬열 · 강기정 · 백재현 · 김효석 · 김재윤 · 강기갑 · 노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계속) .....	23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	24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강창일 · 신상진 · 양정례 · 이인기 · 신학용 · 이성현 · 백재현 · 김충조 · 황우여 · 김종률 · 박종희 의원 발의)(계속) .....	24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고승덕 · 김태원 · 이한성 · 한선교 · 주광덕 · 이성현 · 신영수 · 양정례 · 김성수 · 정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87)(계속) .....	24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손범규 · 황영철 · 박민식 · 강성천 · 이화수 · 안형환 · 정갑윤 · 손숙미 · 윤석용 · 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2)(계속) .....	24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남경필 · 박민식 · 성윤환 · 손범규 · 원유철 · 이사철 · 이종혁 · 황영철 · 황진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5404)(계속) .....	24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조진형 · 김성조 ·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	24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김소남 · 이한성 · 유기준 · 정해걸 · 이정선 · 조배숙 · 정희수 · 김영선 · 손범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4) .....	24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김정권 · 김소남 · 강용석 · 신영수 · 임동규 · 강기갑 · 이명수 · 박순자 · 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7)(계속) .....	24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김성수 · 임동규 · 김정권 · 이성현 · 이학재 · 윤석용 · 김태원 · 권영세 · 박준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8)(계속) .....	24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 · 이종혁 · 이인기 · 김성	

- 동·강용석·김을동·이한성·이정선·이애주·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 24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진애·박은수·조승수·조영택·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4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이종걸·안민석·조정식·최재성·원혜영·문희상·강성종·백원우·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4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화수·이종혁·유성엽·황우여·오제세·김옥이·윤석용·유재중 의원 발의) ..... 24
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김정권·이한성·최연희·박민식·백성운·이인기·정수성·이해봉·고승덕 의원 발의)(계속) ..... 24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김금래·진영·김효재·조윤선·유성엽·홍일표·권경석·이성현·조진래·이경재·권영진·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 24
1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원혜영·조배숙·박영선·이낙연·박은수·김성곤·김재균·강기갑·조영택·전혜숙·김효석 의원 발의)(계속) ..... 24
1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조배숙·강창일·유선호·노영민·김효석·김영진·조영택·최인기·정세균·조경태·박기춘·김희철·김영록·김우남·서종표·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24
1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찬열·박영선·신낙균·김재윤·김성곤·김진표·박은수·강기갑·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1)(계속) ..... 24
1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 24
1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5
1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윤석용·김성곤·성윤환·이한성·유승민·유기준·조전혁·권영진·여상규·김정훈 의원 발의) ..... 25
1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손범규·유성엽·이해봉·김효재·유승민·임두성·김성수·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25
13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영진·조영택·이명수·정갑윤·문학진·박선숙·허태열·정장선·조정식·김성곤·우제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7059)(계속) ..... 25
1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최구식·안효대·윤석용·백성운·이한성·이성현·김성태·손숙미·김성수·이사철·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25
1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이춘식·이주영·한선교·나성린·이한성·이해봉·박상돈·노철래·진성호·이윤석·유성엽·신영수·신상진·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 25
1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이한성·김태원·김정권·유성엽·정병국·임두성·황진하·한선교·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 25
14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최연희·한기호·박우순·김학송·최병국·최종원·신낙균·최경희·이윤성·송훈석 의원 발의) ..... 25
1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유선호·김정권·강기갑·김영진·오제세·최규성·전현희·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38) ..... 25
14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정희수·김세연·조전혁·정해걸·박보환·한선교·진성호·안경률·김성동·신영수·안형환 의원 발의) ..... 25
1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권영진·김세연·김태환·박우순·심대평·안규백·유승민·이진삼·정수성·정희수·최경희·최연희·허천·황영철 의원 발의) ..... 25

1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김세연 · 임영호 · 유기준 · 안경률 · 김소남 · 김호연 · 김금래 · 박대해 · 박민식 의원 발의) .....	25
1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 · 김춘진 · 조영택 · 김영록 · 김재균 · 김우남 · 원혜영 · 변재일 · 김동철 · 박주선 · 이종걸 · 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25
1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 · 최구식 · 이인제 · 김성태 · 장제원 · 정진섭 · 장윤석 · 정양석 · 이사철 · 조해진 · 신영수 · 정몽준 · 강명순 · 신성범 · 이해주 · 장광근 · 강승규 · 고흥길 · 허천 · 이철우 의원 발의) .....	25
1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1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 · 이재선 · 이춘식 · 신상진 · 김성수 · 신성범 · 황영철 · 조운선 · 이해주 · 강명순 · 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	25
1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백재현 · 강기정 · 유선호 · 노영민 · 이찬열 · 오제세 · 박기춘 · 김효석 · 강기갑 의원 발의) .....	25
1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 · 권영진 · 김정권 · 서병수 · 이진복 · 김용구 · 황영철 · 김세연 · 이한성 · 유재중 · 김낙성 · 장제원 · 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	25
15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경재 · 이병석 · 이한성 · 장윤석 · 박순자 · 유성엽 · 조원진 · 장광근 · 이은재 · 김충환 의원 발의) .....	25
1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295)(계속) .....	25
1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234)(계속) .....	25
15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651) .....	25
15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15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최구식 · 안효대 · 윤석용 · 백성운 · 김을동 · 유기준 · 진성호 · 이한성 · 이성현 · 김성태 · 손숙미 · 김성수 · 김기현 · 이사철 · 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25
16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백재현 · 강기정 · 유선호 · 노영민 · 이찬열 · 오제세 · 박기춘 · 김효석 · 강기갑 의원 발의) .....	26
16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유성엽 · 조영택 · 강기정 · 조경태 · 김영록 · 정해걸 · 최규성 · 김효석 · 김재운 의원 발의) .....	26
1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1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 · 송영선 · 이한성 · 김성곤 · 이경재 · 정진섭 · 이재선 · 이춘식 · 신상진 · 김성수 · 신성범 · 황영철 · 조운선 · 이해주 · 김금래 · 강명순 · 최병국 · 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	26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이한성 · 이찬열 · 차명진 · 장윤석 · 김희철 · 정희수 · 최규성 · 유선호 · 신영수 · 김기현 · 이학재 · 윤상현 · 박상은 · 이경재 · 신성범 · 이윤성 · 조전혁 · 이상권 · 조진형 · 신학용 의원 발의) .....	26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392)(계속) .....	26
16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16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267)(계속) .....	26
1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 · 정희수 · 강길부 · 허천 · 여상규 · 이화수 · 성운환 · 정해걸 · 노철래 · 김성수 의원 발의) .....	26
169. 沿岸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최옥철 의원 대표발의)(최옥철 · 김일윤 · 신학용 · 이한성 · 조정식 · 안홍준 · 김충조 · 강석호 · 김성곤 · 구본철 · 이진삼 · 박상은 · 김성태 · 조경태 · 윤영 · 박상돈 · 송훈석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	26
1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이한성 · 이인기 · 유기준 · 황우여 · 원유철 · 김태원 · 홍사덕 · 김을동 · 서상기 · 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	26
1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주승용 · 유성	

- 업·박은수·이종걸·장병완·조정식·조경태·최규성·최인기·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26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31
17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31
1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 동의를 건 ..... 31
175.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정부 제출) ..... 32
17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이한성·윤석용·정희수·김정권·김세연·차명진·유정현·박대해·최경희·김선동·박보환·서상기·주광덕·안효대 의원 발의) ..... 32
17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17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17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김정권·김호연·이윤성·이상권·최규성·송민순·류근찬·조원진·변재일·강길부·정수성 의원 발의) ..... 32
18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민식·황영철·김세연·정갑윤·윤석용·박보환·조진혁·서상기·신성범 의원 발의) ..... 32
18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운석 의원 대표발의)(장운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최구식 의원 발의) ..... 32
182.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윤석용·손숙미·이경제·김효재·이성현·이은재·오제세·김성조·조진래·김학용·원희룡·권영세·이두아·정갑윤·안규백·우제창·김무성·신영수·서상기·전여옥·정진섭·주호영·정희수·이명규·손범규·김성태·김태원·강석호·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 32
1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신성범·황영철·김세연·윤석용·정태근·권영진·최경희·허천·강성천·정옥임·권성동 의원 발의) ..... 32
184.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이정희·권영길·홍희덕·金先東·천정배·유성엽·이낙연·이미경·조승수·김재윤·유원일 의원 발의) ..... 32
1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1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박영아·이인기·김형오·윤석용·서종표·박병석·박선숙·이성남·허천·장광근·변재일·정범구·윤진식·이진삼·홍재형·김호연·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96) ..... 32
18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이인제·이명수·이진삼·임영호·이재선·김창수·변용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 ..... 32
18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규식·장세환·김성곤·신건·박우순·안규백·정동영·양승조·안민석·천정배 의원 발의) ..... 32
1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1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유승민·김성수·심재철·손범규·백원우·조정식·문학진·원유철 의원 발의) ..... 33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원유철·김용구·김을동·안규백·이종혁·여상규·김옥이·김학송 의원 발의) ..... 33
19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경제·이한성·정희수·김정권·차명진·유정현·임동규·최경희·정진섭·주광덕·박보환 의원 발의) ..... 33
1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유승민·김성수·심재철·손범규·백원우·조정식·문학진·원유철·최경희 의원 발의) ..... 33

1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강석호 · 윤영 · 이상권 · 여상규 · 김성수 · 허원제 · 강승규 · 신성범 · 성윤환 · 고흥길 · 이화수 · 손범규 의원 발의) ..... 33
1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이명수 · 원유철 · 김용구 · 김을동 · 안규백 · 이종혁 · 여상규 · 김옥이 · 김학송 의원 발의) ..... 33
1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1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 · 정희수 · 김성태 · 윤영 · 최연희 · 권성동 · 정영희 · 한기호 · 이정선 · 장광근 의원 발의) ..... 33
1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이찬열 · 백재현 · 유선호 · 박기춘 · 김영진 · 최규성 · 유성엽 · 주승용 · 강창일 의원 발의) ..... 33
19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여상규 · 정해걸 · 백성운 · 김재경 · 권영진 · 신성범 · 조진래 · 장광근 · 신영수 · 정갑윤 의원 발의) ..... 33
20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한성 · 유기준 · 주호영 · 윤석용 · 김성태 · 윤상현 · 나성린 · 김정 · 안홍준 의원 발의) ..... 33
2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 · 김영진 · 김영록 · 권선택 · 김낙성 · 이용희 · 이명수 · 김용구 · 김창수 · 이진삼 · 변웅전 의원 발의) ..... 33
2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우남 · 오제세 · 조영택 · 주승용 · 장병완 · 최규성 · 김영진 · 유선호 · 김춘진 의원 발의) ..... 33
2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 · 윤석용 · 강기정 · 강봉균 · 조영택 · 김재균 · 김상희 · 김재윤 · 이석현 · 김성곤 · 신낙균 · 유선호 · 박은수 · 송민순 · 김유정 · 최종원 · 신건 · 노영민 · 최영희 · 안민석 · 양승조 · 전해숙 · 유성엽 · 원혜영 · 최규식 · 백재현 · 이찬열 · 임영호 · 권선택 · 박선숙 의원 발의) ..... 33
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최규성 · 강창일 · 김영록 · 이찬열 · 문학진 · 김재윤 · 김성곤 · 유성엽 · 신영수 의원 발의) ..... 33
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정희수 · 정진섭 · 백성운 · 최구식 · 박기춘 · 이한성 · 이학재 · 장제원 · 허천 · 현기환 · 장광근 · 안홍준 · 김재윤 · 유선호 · 장윤석 · 강기갑 · 심재철 · 권선택 의원 발의) ..... 33
2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신상진 · 정희수 · 김정권 · 김성동 · 김영선 · 김소남 · 강창일 · 이명수 · 손범규 의원 발의) ..... 33
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권영진 · 이명규 · 이사철 · 이인기 · 임동규 · 정갑윤 · 주광덕 · 황영철 · 현기환 의원 발의) ..... 33
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정훈 · 이종혁 · 이한성 · 유성엽 · 정미경 · 정옥임 · 이재선 · 원희목 · 이재주 · 최영희 · 양승조 · 최경희 의원 발의) ..... 33
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 · 최영희 · 이재선 · 이재주 · 윤석용 · 이낙연 · 이춘식 · 김세연 · 황영철 · 박준선 · 추미애 · 김금래 · 신성범 · 김성순 · 이인제 · 이해봉 · 정희수 의원 발의) ..... 33
2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 · 문학진 · 강기갑 · 김재균 · 최규식 · 김학재 · 조영택 · 박영선 · 김춘진 · 강창일 · 김영진 의원 발의) ..... 34
2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한성 · 이종혁 · 황우여 · 오제세 · 김옥이 · 윤석용 · 유재중 · 현경병 · 원희목 의원 발의) ..... 34
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백재현 · 유선호 · 박기춘 · 오제세 · 이찬열 · 강창일 · 노영민 · 강기정 · 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5) ..... 34
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김금래 · 권영진 · 조진래 · 정진섭 · 허원제 · 서병수 · 김기현 · 김재경 · 정갑윤 의원 발의) ..... 34



2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1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김소남 · 이한성 · 유기준 · 정해결 · 이정 선 · 조배숙 · 정희수 · 김영선 · 손범규 의원 발의) .....	34
21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오제세 · 김상희 · 김영록 · 최규성 · 양승 조 · 강창일 · 김성수 · 이사철 · 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7) .....	34
217.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조배숙 · 이용희 · 김성수 · 유성엽 · 김춘 진 · 김효석 · 전현희 · 최규성 · 강기갑 · 유선호 · 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9) .....	34
219.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유선호 · 이윤석 · 김진표 · 김성곤 · 박은수 · 유성엽 · 최규성 · 이찬열 · 박주선 의원 발의) .....	34
2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2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용희 · 류근찬 · 김낙성 · 변웅전 · 임영호 · 이재선 · 김창수 · 유성엽 · 정하균 의원 발의) .....	34
2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김소남 · 김정 권 · 이한성 · 정영희 · 김성수 · 변재일 · 권경석 · 박희태 · 김정훈 · 원희목 · 이인기 의원 발의) .....	34
2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주승용 · 이춘석 · 박은수 · 전현희 · 장세 환 · 박영선 · 신낙균 · 박우순 · 박준선 의원 발의) .....	34
2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224) .....	34
2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 · 광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金先 東 · 유원일 · 김우남 · 조배숙 · 최규성 · 유성엽 · 조승수 · 김춘진 의원 발의) .....	34
22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29.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조영택 · 최규성 · 김우남 · 김효 석 · 김성곤 · 김진표 · 김춘진 · 유선호 · 유성엽 의원 발의) .....	34
2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3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 · 정희수 · 유기준 · 김우남 · 윤영 · 조진래 · 한기호 · 이철우 · 최구식 · 조배숙 · 김태원 · 이병석 · 이명수 · 유성엽 의원 발의) .....	34
23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 · 광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 길 · 金先東 · 유원일 · 조배숙 · 최규성 · 유성엽 · 조승수 · 김낙성 · 김춘진 의원 발의) .....	34
23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23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 · 정의화 · 최구식 · 배은희 · 신성범 · 안홍 준 · 변웅전 · 김을동 · 여상규 · 김태호 · 조진형 · 황진하 · 강길부 · 송영선 · 김재경 · 송광호 · 이경 재 · 고흥길 · 주호영 · 안상수 · 이한성 · 이학재 의원 발의) .....	34

(15시18분 개의)

○위원장 장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FTA 문제 때문에 여의도 정가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나라당은 지금 의총 중입니다마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

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조의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장광근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 순서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또 의결한 다음에 계속해서 신규 상정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또 그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21분)

○위원장 장광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사보임 관계로 잠시 공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차명진 위원께서 외통위에 사보임되어 가셨다가 다시 저희 국토해양위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던 차명진 위원을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일 중요한 법률안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김상희 · 김춘진 · 송영길 · 양승조 · 이시종 · 최문순 · 박은수 · 변재일 · 김성곤 · 강창일 · 전현희 · 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이상민 · 김창수 · 김용구 · 박선영 · 임영호 · 안민석 · 이영애 · 황우여 · 정하균 · 권선택 · 이주영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 발의)(이성현 · 고승덕 · 김정권 · 손범규 · 유성엽 · 이해봉 · 김효재 · 유승민 · 김소남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김동철 · 김우남 · 강기정 · 이용섭 · 김춘진 · 송영길 · 박은수 · 김상희 · 이미경 · 박주선 · 김종률 · 김영진 · 조영택 의원 발의)(계속)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 발의)(정장선 · 김용구 · 이한성 · 김재균 · 정병

- 국 · 양승조 · 우제창 · 김부겸 · 강기정 · 주승용 · 최철국 · 조정식 · 조승수 · 이해봉 · 김춘진 · 이종혁 · 오제세 · 김유정 · 박기춘 · 이시종 · 박순자 · 최규성 · 이석현 · 김성곤 · 강창일 · 서갑원 · 원혜영 · 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문학진 · 강창일 · 김재균 · 김춘진 · 서종표 · 송민순 · 신낙균 · 이범관 · 이석현 · 정동영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김성태 · 강운태 · 이한성 · 황영철 · 신학용 · 유정현 · 조원진 · 강성천 · 현기환 · 이종혁 · 김성식 · 고승덕 · 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 발의)(박대해 · 정양식 · 고승덕 · 김영진 · 이찬열 · 이한성 · 이명수 · 이성현 · 홍희덕 · 권선택 · 이해훈 · 나성린 · 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이진삼 · 이명수 · 임영호 · 김창수 · 이상민 · 김용구 · 김충환 · 권선택 · 정갑윤 · 박선영 · 유기준 · 이성현 의원 발의)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 발의)(정진섭 · 정희수 · 김성수 · 허천 · 이춘식 · 박상은 · 유일호 · 김광림 · 나성린 · 정양식 · 이사철 · 허태열 · 유승민 · 원유철 · 조해진 · 유정현 · 권영진 · 강성천 · 차명진 · 주호영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 발의)(박준선 · 강승규 · 권성동 · 김성동 · 손숙미 · 안형환 · 원희목 · 조문환 · 조진래 · 조해진 의원 발의)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신상진 · 김정권 · 이한성 · 김성수 · 김성태 · 유재중 · 이명수 · 김을동 · 정의화 · 김정훈 의원 발의)
-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상수 · 유성엽 · 강석호 · 이정선 · 이화수 · 김성태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 발의)(이명규 · 송영선 · 윤석용 · 강성천 · 이한성 · 정미경 · 김정훈 · 김성수 · 강석호 · 안상수 · 김정권 · 김태원 · 신상진 · 정양식 · 박종희 · 김효재 · 이화수 · 박준선 · 안홍준 · 나경원 · 허범도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김을동·노철래·우윤근·박종근·정영희·서청원·정하균·손범규·오제세·안효대·김옥이·권영진 의원 발의)(계속)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김용구·최철국·류근찬·이진삼·우윤근·임영호·심대평·박민식·김우남·김창수·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박준선·안홍준·윤석용·이정선·김학용·신성범·김성수·허원제·조윤선·정진섭·이병석·조진형 의원 발의)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윤석용·안효대·김낙성·노철래·권경석·허천·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2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신성범·윤석용·권경석·주승용·박준선·김태호·이명수·정수성·조원진 의원 발의)
2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상수·유성엽·강석호·이정선·이화수·김성태·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성수·임동규·정병국·백성운·정옥임·이한성·손범규·손숙미·양정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3)(계속)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김옥이·강석호·이정선·원희목·이화수·김성태·임동규·정의화·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태원·유기준·김옥이·이인기·윤상현·허태열·박준선·이한성·홍장표·김성수 의원 발의)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유성엽·김종률·김상희·백재현·최문순·최철국·김영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성태·김옥이·고승덕·안상수·윤석용·손범규·안효대·정태근·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안효대·이한성·임두성·원희목·박대해·배은희·이명규·강성천·손숙미 의원 발의)(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정병국·김성조·신학용·김성태·손숙미·유재중·김성수·이윤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5)(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한성·안상수·김성태·김성조·주성영·이인기·남경필·김용태·정병국·김세연·조전혁 의원 발의)(계속)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김소남·임동규·노철래·황영철·김선동·권성동·조문환·진영·권영세·김성희·박준선·김성조·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계속)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신영수·김정권·김소남·강길부·임동규·신지호·정해걸·강석호·성윤환 의원 발의)(계속)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유재중·김선동·이한성·김성수·박대해·현경병·김금래·손숙미·최경희·강명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6)(계속)
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안규백·백재현·이낙연·김충조·강창일·김희철·박상돈·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3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이미경·김성순·강창일·조정식·최규식·이시종·박영선·김성곤·이용섭·전병헌·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김춘진·곽정숙·홍희덕·유성엽·문국현·김희철·강기갑·이정희·이용경 의원 발의)(계속)

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임두성 · 정희수 · 김희철 · 정갑윤 · 강길부 · 남경필 · 이윤성 · 김재경 · 최병국 의원 발의)(계속)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 · 윤진식 · 김학송 · 김광림 · 변웅전 · 이인제 · 이한성 · 이낙연 · 장윤석 · 성윤환 의원 발의)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 · 노철래 · 송민순 · 강창일 · 송영길 · 이춘석 · 이경재 · 송훈석 · 유성엽 · 김희철 · 신학용 · 류근찬 · 박종희 · 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 ·곽정숙 · 권영길 · 김성곤 · 김영진 · 김우남 · 김재윤 · 변재일 · 심대평 · 유성엽 · 이정희 · 이진삼 · 조승수 · 최인기 · 최철국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정의화 · 송광호 · 김정훈 · 장제원 · 김동성 · 박보환 · 신성범 · 조전혁 · 성윤환 · 서상기 · 조원진 · 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 · 이한성 · 윤석용 · 유성엽 · 김호연 · 김소남 · 김금래 · 원희목 · 주성영 · 정희수 · 박민식 · 현기환 · 김광림 의원 발의)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동철 · 김부겸 · 김재균 · 김재윤 · 백재현 · 양승조 · 오제세 · 유선호 · 이용섭 · 이종걸 · 이찬열 · 전병헌 · 전현희 · 전해숙 · 조경태 · 조정식 · 천정배 · 최규성 · 최종원 의원 발의)
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류근찬 · 김창수 · 임영호 · 이은재 · 심대평 · 권선택 · 김충환 · 김용구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이한성 · 이인기 · 황우여 · 유기준 · 원유철 · 김태원 · 홍사덕 · 김을동 · 서상기 · 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 최철국 · 이명수 · 김창수 · 임영호 · 류근찬 · 최인기 · 박선영 · 김용구 · 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4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변웅전 · 류근찬 · 임영호 · 권선택 · 이명수 · 김용구 · 박선영 · 이진삼 · 심대평 · 이재선 · 김낙성 · 이영애 · 이회창 · 조순형 · 이용희 · 김창수 · 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4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신영수 · 진성호 · 안홍준 · 이화수 · 유기준 · 안상수 · 손범규 · 김충조 · 이해봉 · 이정선 · 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5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이찬열 · 유선호 · 강창일 · 강기정 · 김재균 · 김영록 · 박기춘 · 김재윤 · 김효석 · 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강창일 · 양정래 · 김성수 · 정영희 · 이한성 · 원혜영 · 이화수 · 송영길 · 김소남 · 이군현 · 이성현 · 정몽준 · 최영희 · 박영아 · 임동규 · 강성종 · 고승덕 · 김학용 · 이강래 · 이한구 · 김금래 · 주호영 · 김부겸 · 우윤근 · 김기현 · 전병헌 · 변재일 · 이해봉 · 김선동 · 주광덕 · 김영진 · 정해걸 · 신상진 · 허범도 · 김낙성 · 최규식 · 김태원 · 송훈석 · 강석호 · 윤상현 · 김성순 · 조경태 · 김성곤 · 윤두환 · 김무성 · 유기준 · 우제창 · 이낙연 · 신낙균 · 윤영 · 서상기 · 강기정 · 공성진 · 김학송 · 박진 · 이병석 · 이광재 · 안경률 · 김용구 · 조해진 · 조진래 · 권경석 · 유정복 · 최규성 · 안홍준 · 최규식 · 서종표 · 이에주 · 김상희 · 김옥이 · 최문순 · 강명순 · 여상규 · 황영철 · 노영민 · 이석현 · 신학용 · 이명규 · 김영

록·박대해·이용희·이춘석·박민식·이인제·최인기·조정식·허원제·정진석·이윤석·조영택·박영선·강봉균·이종혁·이정선·유선호·주승용·양승조·신지호·안규백·김성태·황우여·이사철·이범래·원유철·김춘진·강기갑·정진섭·백재현·문화상·정장선·전현희·김중조·백성운·허태열·이철우·정양석·박상은·김광립·김성식·김성조·권택기·박준선·권영길·조진혁·손범규·정병국·김용태·전여옥·유정현·권영진·장윤석·윤석용·진수희·나경원·박종희·조배숙·차명진·서갑원·최철국·조운선·장광근·이미경·김을동·정옥임·성윤환·강용석·박기춘·강운대·박상돈·정갑윤·정희수·홍재형·안효대·이영애·정미경·김세연·박지원·권선택·최욱철·김진표·이학재·진성호·장제원·강승규·이진복·신성범·송광호·임영호·홍사덕·현기환·김태환·이시중·임해규·장세환·유승민·박종근·박주선·조원진·이경재·이윤성·김동성·김정훈·유성엽·김영우·유재중·서청원·이용삼·정의화·김효재·정태근·손숙미·배영식·고홍길·배은희·김재윤·천정배·현경병·박보환·안상수·이명수·이상민·홍정욱·조진형·서병수·이범관·최재성·백원우·주성영·이계진·김장수·황진하·이춘식·나성린·홍장표·구상찬·김동철·홍일표·이재선·김재균·허천·김성희·유일호·김우남·이종걸·김충환·원희룡·강길부·김종률·정두언·문학진·김희철·이종구·최병국·오제세·최경환·임태희·이혜훈·김창수·변웅전·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5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한성·안상수·김성태·김성조·주성영·이인기·남경필·김용태·정병국·김세연·조진혁 의원 발의)(계속)

**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안효대·현경병·유재중·이인기·김태원·강길부·이한성·이진복·노철래·최병국·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5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

표발의)(장제원·이한성·김기현·이윤석·유성엽·윤영·김세연·김정훈·안효대·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5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김광립·이한성·이진삼·김용구·이명수·이철우·김호연·심대평·유정현·권영진 의원 발의)

**5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원유철·이사철·이인기·이한성·이두아·차명진·김태원·정병국·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한성·임영호·유기준·유승민·배영식·현기환·안효대·이인기·김성태·김종률·정갑윤·최구식·이윤석·김세연·최연희·박민식·정해걸·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6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우윤근·최철국·유원일·최문순·김성곤·조승수·조영택·문학진·이찬열·전현희·백원우·양승조·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6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정영희·조진혁·권영진·박보환·김세연·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 의원 발의)(계속)

**6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오제세·윤진식·정범구·이인제·노영민·변재일·백성운·이학재·정의화·정수성·최구식·최규성·홍재형·장제원·조원진·장윤석·현기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30)

- 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원혜영·박병석·양승조·이시중·노영민·홍재형·변재일·김종률·박은수·백원우·전현희·오제세 의원 발의)
- 6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심재철·이정선·김성희·강용석·김동성·강성천·이애주·배은희·이춘식 의원 발의)
-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6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강기정·이용섭·최규식·변재일·최영희·이종걸·유선호·양승조·김진표·김동철·조영택·강기갑·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김재균·오제세·김성곤·조영택·백재현·강창일·이찬열·박선숙·송민순 의원 발의)
- 7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이한성·이인기·손범규·정해걸·신상진·이해봉·임동규·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 7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현·박선영·송훈석·윤상일·이종혁·서상기·김혜성 의원 발의)(계속)
- 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이정선·정영희·윤영·정희수·권성동·장제원·박우순·한기호·송훈석 의원 발의)
- 7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현·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계속)
- 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경재·정해걸·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현·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 7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8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이정희·홍희덕·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8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한성·유기준·황우여·강길부·안효대·김세연·박순자·허원재·김충환 의원 발의)(계속)
- 8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정권·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강창일·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권영진·김정권·김태원·송광호·유성엽·윤석용·윤진식·이낙연·이사철·이학재·이한성·정양석·정해걸·홍정욱 의원 발의)
- 86.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손범규·장제원·유정현·원유철·신지호·김소남·이범래·권경석·김성조·이은재·강기정·김유정·김충조·이명수·최인기·이용삼·이한성·정갑윤·이명규·정해걸·김정권·김성수·원희룡·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87.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김옥이·이종혁·이한성·김영진·김정권·유성엽·정옥임·이두아·신상진·김성태·신학용·정해걸·김태원·김성순·송영선·조운선·이명규·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8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490)(계속)
92.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31)(계속)
9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현·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계속)
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운성·정해걸·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현·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김용구·안효대·유기준·노철래·장광근·김무성·정희수·허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9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손범규·강기갑·김정권·이정선·강용석·한선교·안효대·김호연·유기준·김태원·강길부·임해규·황우여·김소남·이한성·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10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최규식·신영수·조배숙·이한성·이정선·신상진·한선교·김기현·김충환·김성곤·임영호·최경희·김무성 의원 발의)
10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유기준·윤석용·이춘식·장윤석·정미경·이한성·심대평·이재선·정영희 의원 발의)
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손숙미·전혜숙·유기준·유재중·김호연·김금래·백성운·김성태·홍영표·신영수·황영철·김소남·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10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계속)
10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계속)
10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이한성·김소남·김정권·임두성·이해봉·김성조·김효재·정희수·강석호·이혜훈·구본철·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11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유기준·김무성·황우여·이해봉·한선교·김효재·안홍준·신영수·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1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최병국·윤영·정희수·최연희·이한성·최구식·박상은·신영수·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11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김우남·오제세·강창일·유선호·이찬열·강기정·백재현·김효석·김재윤·강기갑·노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계속)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강창일·신상진·양정례·이인기·신학용·이성현·백재현·김충조·황우여·김종률·박종희 의원 발의)(계속)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고승덕·김태원·이한성·한선교·주광덕·이성현·신영수·양정례·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87)(계속)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손범규·황영철·박민식·강성천·이화수·안형환·정갑윤·손숙미·윤석용·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2)(계속)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남경필·박민식·성윤환·손범규·원유철·이사철·이종혁·황영철·황진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5404)(계속)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이한성·유기준·정해걸·이정선·조배숙·정희수·김영선·손범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4)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김소남·강용석·신영수·임동규·강기갑·이명수·박순자·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7)(계속)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성수·임동규·김정권·이성현·이학재·윤석용·김태원·권영세·박준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8)(계속)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종혁·이인기·김성동·강용석·김을동·이한성·이정선·이애주·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진애·박은수·조승수·조영택·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이종걸·안민석·조정식·최재성·원혜영·문희상·강성종·백원우·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화수·이종혁·유성엽·황우여·오제세·김옥이·윤석용·유재중 의원 발의)
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김정권·이한성·최연희·박민식·백성운·이인기·정수성·이해봉·고승덕 의원 발의)(계속)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김금래·진영·김효재·조윤선·유성엽·홍일표·권경석·이성현·조진래·이경재·권영진·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1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원혜영·조배숙·박영선·이낙연·박은수·김성곤·김재균·강기갑·조영택·전혜숙·김효석 의원 발의)(계속)
1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조배숙·강창일·유선호·노영민·김효석·김영진·조영택·최인기·정세균·조정태·박기춘·김희철·김영록·김우남·서종표·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1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찬열·박영선·신낙균·김재운·김성곤·김진표·박은수·강기갑·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1)(계속)
1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1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윤석용·김성곤·성윤환·이한성·유승민·유기준·조전혁·권영진·여상규·김정훈 의원 발의)
1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손범규·유성엽·이해봉·김효재·유승민·임두성·김성수·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3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영진·조영택·이명수·정갑윤·문학진·박선숙·허태열·정장선·조정식·김성곤·우제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7059)(계속)
1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최구식·안효대·윤석용·백성운·이한성·이성현·김성태·손숙미·김성수·이사철·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1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이춘식·이주영·한선교·나성린·이한성·이해봉·박상돈·노철래·진성호·이윤석·유성엽·신영수·신상진·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이한성·김태원·김정권·유성엽·정병국·임두성·황진하·한선교·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14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최연희·한기호·박우순·김학송·최병국·최종원·신낙균·최경희·이윤성·송훈석 의원 발의)
1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유선호·김정권·강기갑·김영진·오제세·최규성·전현희·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38)
14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정희수·김세연·조전혁·정해걸·박보환·한선교·진성호·안정률·김성동·신영수·안형환 의원 발의)
1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권영진·김세연·김태환·박우순·심대평·안규백·유승민·이진삼·정수성·정희수·최경희·최연희·허천·황영철 의원 발의)
1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임영호·유기준·안정률·김소남·김호연·김금래·박대해·박민식 의원 발의)
1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춘진·조영택·김영록·김재균·김우남·원혜영·변재일·김동철·박주선·이종걸·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최구식·이인제·김성태·장제원·정진섭·장윤석·정양석·이사철·조해진·신영수·정몽준·강명순·신성범·이애주·장광근·강승규·고홍길·허천·이철우 의원 발의)
1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이재선·이춘식·신상진·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강명순·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1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백재현·강기정·유선호·노영민·이찬열·오제세·박기춘·김효석·강기갑 의원 발의)
1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이한성·유재중·김낙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15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경재·이병석·이한성·장윤석·박순자·유성엽·조원진·장광근·이은재·김충환 의원 발의)
1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295)(계속)
1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234)(계속)
15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651)
15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최구식·안효대·윤석용·백성운·김을동·유기준·진성호·이한성·이성현·김성태·손숙미·김성수·김기현·이사철·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16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백재현·강기정·유선호·노영민·이찬열·오제세·박기춘·김효석·강기갑 의원 발의)
- 16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효석·김재윤 의원 발의)
- 1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송영선·이한성·김성곤·이경재·정진섭·이재선·이춘식·신상진·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김금래·장명순·최병국·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이한성·이찬열·차명진·장윤석·김희철·정희수·최규성·유선호·신영수·김기현·이학재·윤상현·박상은·이경재·신성범·이윤성·조전혁·이상권·조진형·신학용 의원 발의)
-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9392)(계속)
- 16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6267)(계속)
- 1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강길부·허천·여상규·이화수·성윤환·정해걸·노철래·김성수 의원 발의)
- 169. **沿岸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최육철 의원 대표발의)(최육철·김일윤·신학용·이한성·조정식·안홍준·김충조·강석호·김성곤·구본철·이진삼·박상은·김성태·조경태·윤영·박상돈·송훈석·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 1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이한성·이인기·유기준·황우여·원유철·김태원·홍사덕·김을동·서상기·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 1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유성엽·박은수·이종걸·

장병완·조정식·조경태·최규성·최인기·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장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1항까지 1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 많이 애쓰셨다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먼저 1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최규성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정말 분투한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제 방에 있으면서 보면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아껴 가면서 이렇게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규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규성** 법안심사소위원장 최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낙성 의원, 박상돈 의원, 홍장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고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와 중개보조원 수 제한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수희 의원, 이상민 의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두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를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과 유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의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며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사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도허가 대상을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놓여 촌도로정비법 등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확대하고 사도개설 허가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박은수 의원,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 윤영 의원, 김소남 의원, 김기현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질환자를 뇌전증환자로 수정하는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표현을 개선하고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출자에 대한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손익금 처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상법의 예에 따라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익금 처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한성 의원과 장광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납치 살해·치사죄와 항공기납치 상해·치사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출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 도난으로 말소된 사업용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장광근 의원, 최구식 의원, 유선호 의원, 박기춘 의원, 권경석 의원, 이명수 의원, 김선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구역 결정이나 변경을 사전에 공고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둘째, 화주 등의 요구에 따라 과적을 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 통행료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홍재형 의원과 전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 사업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토지가격을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넷째,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의 도시개발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박상은 의원, 현기환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을 포함한 총 7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형사처벌로 인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결격사유를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건조비용과 여객선 등의 운항관리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검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은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무역항과 연안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셋째,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편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함께 항만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제가 본 중에 최규성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빨리하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하긴 17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저는 한 20분 이상 예상을 했는데 딱 7분 만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예결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보고된 대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되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 및 답변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18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3항까지 11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3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8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대로, 대신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 4건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2건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과 제56항, 2건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 3건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9항과 제6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3항까지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며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과 제68항,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8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79항과 제8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과 제82항,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83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84항과 제8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89항까지 4건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90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과 제92항, 2건의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93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1항까지 8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02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0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과 제109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과 제111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12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15항까지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17항부터 제128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부터 제136항까지 8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또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제147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과 제14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0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부터 제157항까지 7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5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과 제16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6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부터 제165항까지 3건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67항과 제16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과 제171항 2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안건들을 상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처리할 사항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계속해서 신규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17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1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5시43분)

○위원장 장광근 배포해 드린 유인물 의사일정 제172항부터 의사일정 제17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2항과 제173항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마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나 자구 심사를 의뢰했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 변경의 필요성과 신규 상정 법률과의 통합심사 필

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들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아서 새로 신규 상정된 법안과 다시 심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받은 것입니다. 다시 반려받아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73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인 이미경 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 법률안의 철회에 대해서 이미경 의원의 요청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5.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정부 제출)

**17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이한성·윤석용·정희수·김정권·김세연·차명진·유정현·박대해·최경희·김선동·박보환·서상기·주광덕·안효대 의원 발의)

**17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김정권·김호연·이윤성·이상권·최규성·송민순·류근찬·조원진·변재일·강길부·정수성 의원 발의)

**18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민식·황영철·

김세연·정갑윤·윤석용·박보환·조전혁·서상기·신성범 의원 발의)

**18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욱이·송광호·최구식 의원 발의)

**182.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윤석용·손숙미·이경재·김효재·이성현·이은재·오제세·김성조·조진래·김학용·원희룡·권영세·이두아·정갑윤·안규백·우제창·김무성·신영수·서상기·진여옥·정진섭·주호영·정희수·이명규·손범규·김성태·김태원·강석호·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1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신성범·황영철·김세연·윤석용·정태근·권영진·최경희·허천·강성천·정옥임·권성동 의원 발의)

**184.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이정희·권영길·홍희덕·金先東·천정배·유성엽·이낙연·이미경·조승수·김재윤·유원일 의원 발의)

**1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박영아·이인기·김형오·윤석용·서종표·박병석·박선숙·이성남·허천·장광근·변재일·정범구·윤진식·이진삼·홍재형·김호연·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96)

**18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이인제·이명수·이진삼·임영호·이재선·김창수·변용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

**18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규식·장세환·김성곤·신건·박우순·안규백·정동영·양승조·안민석·천정배 의원 발의)



1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김소남 · 유승민 · 김성수 · 심재철 · 손범규 · 백원우 · 조정식 · 문학진 · 원유철 의원 발의)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이명수 · 원유철 · 김용구 · 김을동 · 안규백 · 이종혁 · 여상규 · 김옥이 · 김학송 의원 발의)
19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이정재 · 이한성 · 정희수 · 김정권 · 차명진 · 유정현 · 임동규 · 최경희 · 정진섭 · 주광덕 · 박보환 의원 발의)
1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김소남 · 유승민 · 김성수 · 심재철 · 손범규 · 백원우 · 조정식 · 문학진 · 원유철 · 최경희 의원 발의)
1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강석호 · 윤영 · 이상권 · 여상규 · 김성수 · 허원재 · 강승규 · 신성범 · 성운환 · 고흥길 · 이화수 · 손범규 의원 발의)
1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이명수 · 원유철 · 김용구 · 김을동 · 안규백 · 이종혁 · 여상규 · 김옥이 · 김학송 의원 발의)
1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 · 정희수 · 김성태 · 윤영 · 최연희 · 권성동 · 정영희 · 한기호 · 이정선 · 장광근 의원 발의)
1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이찬열 · 백재현 · 유선호 · 박기춘 · 김영진 · 최규성 · 유성엽 · 주승용 · 강창일 의원 발의)
19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여상규 · 정해걸 · 백성운 · 김재경 · 권영진 · 신성범 · 조진래 · 장광근 · 신영수 · 정갑윤 의원 발의)
20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한성 · 유기준 · 주호영 · 윤석용 · 김성태 · 윤상현 · 나성린 · 김정 · 안홍준 의원 발의)
2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 · 김영진 · 김영록 · 권선택 · 김낙성 · 이용희 · 이명수 · 김용구 · 김창수 · 이진삼 · 변웅전 의원 발의)
2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우남 · 오제세 · 조영택 · 주승용 · 장병완 · 최규성 · 김영진 · 유선호 · 김춘진 의원 발의)
2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 · 윤석용 · 강기정 · 강봉균 · 조영택 · 김재균 · 김상희 · 김재윤 · 이석현 · 김성곤 · 신낙균 · 유선호 · 박은수 · 송민순 · 김유정 · 최종원 · 신건 · 노영민 · 최영희 · 안민석 · 양승조 · 전해숙 · 유성엽 · 원혜영 · 최규식 · 백재현 · 이찬열 · 임영호 · 권선택 · 박선숙 의원 발의)
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최규성 · 강창일 · 김영록 · 이찬열 · 문학진 · 김재윤 · 김성곤 · 유성엽 · 신영수 의원 발의)
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정희수 · 정진섭 · 백성운 · 최구식 · 박기춘 · 이한성 · 이학재 · 장제원 · 허천 · 현기환 · 장광근 · 안홍준 · 김재윤 · 유선호 · 장윤석 · 강기갑 · 심재철 · 권선택 의원 발의)
2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신상진 · 정희수 · 김정권 · 김성동 · 김영선 · 김소남 · 강창일 · 이명수 · 손범규 의원 발의)
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권영진 · 이명규 · 이사철 · 이인기 · 임동규 · 정갑윤 · 주광덕 · 황영철 · 현기환 의원 발의)
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정훈 · 이종혁 · 이한성 · 유성엽 · 정미경 · 정옥임 · 이재선 · 원희목 · 이에주 · 최영희 · 양승조 · 최경희 의원 발의)
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 · 최영희 · 이재선 · 이에주 · 윤석용 · 이낙연 · 이춘식 · 김세연 · 황영철 · 박준선 · 추미애 · 김금래 · 신성범 · 김성순 · 이인제 · 이해봉 · 정희수 의원 발의)

- 2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문학진·강기갑·김재균·최규식·김학재·조영택·박영선·김춘진·강창일·김영진 의원 발의)
- 2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종혁·황우여·오제세·김옥이·윤석용·유재중·현경병·원희목 의원 발의)
- 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백재현·유선호·박기춘·오제세·이찬열·강창일·노영민·강기정·김춘진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595)
- 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김금래·권영진·조진래·정진섭·허원제·서병수·김기현·김재경·정갑윤 의원 발의)
- 2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이한성·유기준·정해결·이정선·조배숙·정희수·김영선·손범규 의원 발의)
- 21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오제세·김상희·김영록·최규성·양승조·강창일·김성수·이사철·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7)
- 217.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조배숙·이용희·김성수·유성엽·김춘진·김효석·전현희·최규성·강기갑·유선호·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9)
- 21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유선호·이윤석·김진표·김성곤·박은수·유성엽·최규성·이찬열·박주선 의원 발의)
- 2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용희·류근찬·김낙성·변웅전·임영호·이재선·김창수·유성엽·정하균 의원 발의)
- 2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안상수·김소남·김정권·이한성·정영희·김성수·변재일·권경석·박희태·김정훈·원희목·이인기 의원 발의)
- 2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주승용·이춘석·박은수·전현희·장세환·박영선·신낙균·박우순·박준선 의원 발의)
- 2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224)
- 2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金先東·유원일·김우남·조배숙·최규성·유성엽·조승수·김춘진 의원 발의)
- 22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9.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조영택·최규성·김우남·김효석·김성곤·김진표·김춘진·유선호·유성엽 의원 발의)
- 2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정해결·정희수·유기준·김우남·윤영·조진래·한기호·이철우·최구식·조배숙·김태원·이병석·이명수·유성엽 의원 발의)
- 23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金先東·유원일·조배숙·최규성·유성엽·조승수·김낙성·김춘진 의원 발의)
- 23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정의화·최구식·배은희·신성범·안홍준·변웅전·김을동·여상규·김태호·조진형·황진하·강길부·송영선·김재경·송광호·이경제·고홍길·주호영·안상수·이한성·이학재 의원 발의)

(15시44분)

○위원장 장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 도시

제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 235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동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에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의결정족수가 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5항부터 제235항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갑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갑 의원 예.

○위원장 장광근 의사일정 제184항…… 제목이 어마어마하시네요.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가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비, 수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2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 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박탈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거나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도 4대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 댐건설 지역으로 광역상수도를 옮기려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 사업으로 현재 완공되지 않은 보와 댐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투명한 검증을 위해 4대강사업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지속 중단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4대강 하천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구역을 어항구 등으로 지정하여 수산물 가공시설, 수산물 판매시설 등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에게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어업인 지원시설을 설치해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한 어업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어업인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항만구역에 어업인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이 개정안의 취지대로 개정된다면 침체된 무역항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골재채취, 공유수면 매립 등 해양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로 인해 해역 이용 사업자 등

과 어업인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환경영향평가 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역 이용 사업자 등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해역 이용과 해양환경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동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취지를 이해하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택 의원님 계시나요?

**○권선택 의원** 예.

**○위원장 장광근** 의사일정 제187항 행복도시특별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한참 읽으려니까 길어 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권선택 의원** 권선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현행법은 원형지 개발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고,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의 유인책도 부족하다 보니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지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체결되었던 민간투자마저도 취소

되는 등 세종시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려던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세종시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본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권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계시지요?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19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괜찮고요.

**○김희철 의원** 아니요, 건축법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2개……

**○위원장 장광근** 한꺼번에 하시지요.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서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사용 폐지신고만 하면 될 뿐이고 폐차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이륜자동차에서 유출된 연료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폐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원진 의원님 의사일정 205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까.

○조원진 의원 존경하는 장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자동차사가 아닌 구매자에게 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 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고 차량을 선 출고 후 장기보관 판매하는 편법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 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첫째, 자동차 주요 장치나 부품의 반복 수리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의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 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조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제안 법률에 대해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5항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존경하는 장광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업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의 장기지연·중단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로조사 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측량업 등록사무를 기존의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이외에 대도시 시장에게 추가로 이양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공간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추가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은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해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허가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관한 정보체계를 마련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허가 없이 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 행정벌만을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4%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 등에 관계된 사람의 이름의 공개를 금지토록 하는 등 사고조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항만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저탄소 항만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예선업 등록자의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업자에 대한 예선업의 등록제한을 완화하며, 항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활성화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문대상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정식 유류 저장용 부선을 선박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켜 선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대항기관의 수수료 산정 시 사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피해인선이 인접 국가를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절차 중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광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권도엽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제안설명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좌석 앞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내가 아까 깜박했어요. 지금 우리 송기섭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기섭 예.

○위원장 장광근 내가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인사를 좀 시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최민호 전 총장이 퇴임하시고 신임 송기섭 총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첫 번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하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기섭 존경하는 장광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정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한 송기섭입니다.

먼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종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주택 공급, 정부청사 이전, 기반시설 확보,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광근 예, 송기섭 청장 더 애 많이 써서 훌륭한 청으로 또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병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5항부터 제201항까지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분야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면서 정비구역의 해제절차 및 일몰제 도입, 새로운 정비방식의 마련, 그 밖에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향후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지개발계획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보다는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측량의 지역과 종류를 한정하는 허가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공간정보체계 연구·개발 업무의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간정보 관련 연구와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송광호 의원안은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유치원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 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은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지원조직의 중복설치,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하천법의 체계와 해당 지자체의 용수사용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지속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실수요사업시행자 조항을 위반하여 무단 양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호 의원안은 특목고·자율학교 입학생의 전국 모집을 허용하고 세종시 교육자치기구 설립 후에도 학교설치 사무를 건설청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시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청이 학교설치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권선택 의원안은 민간의 원형지 개방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예산지출 상한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체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원활한 자족도시 건설에 긍정적이나,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종걸 의원안은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해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주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제적 부담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태원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등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의화 의원안은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기 위해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목적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 중 어느 하나가 해제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지역·지구 등도 해제하려는 것이나, 개별 법률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 등으로 시·도지사에게 구역해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행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의화 의원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공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3층 이상 건축물을 일정 기준 이상 중·개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허가를 통해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등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천 의원안은 건축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권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적용 범위와 점검권자의 자격 등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희철 의원안은 상습 침수지역에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용도 건축물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의 매입 목적을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은 기존의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통합·발전시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경과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별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광근** 임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태수 전문위원, 의사일정 202항부터 222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허태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분야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이상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조원진 의원안과 이성남 의원안은 중대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소유자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정황적 하자로 인지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교환·환불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중대결함 및 정황적 하자에 대한 자동차제작자 등의 교환·환불·제재의 내용을 이 법에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은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희철 의원안은 이륜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를 통하도록 의무화하여 방치 이륜차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이나 전국적으로 약 6000여 개의 이륜차 판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폐차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할 경우 폐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오히려 방치이륜차가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안은 소유이 없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에 보행자가 운행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나 현재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의 경우 주변 주택지역에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으로 가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광근 의원안은 현행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장광근 위원장, 최규성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호 의원안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통하여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로 전환되면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기존 사업자에게 프리미엄 등 불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약화시켜 서비스 저하 및 가격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등록 기준을 다소 강화하는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대리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223항부터 235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분야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건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윤근 의원님 안은 항만공사로 인하여 건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된 지방도로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거나 도로관리 비용부담 원칙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정부안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지만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기갑 의원님 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시설이용료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협의와 관련하여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협의절차가 형식적·의례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

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톤수 20t 이상의 유류저장용 고정식 부선 등을 동 법의 등록 및 등기대상 선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박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오세세 의원님 안은 해양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업무를 국토해양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원자력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된 원전 및 방사능 조사 체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은 피예인선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의 의무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나 일정 기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낮아 보이므로 현행과 같이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해걸 의원님 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외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의 실효성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기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면서 현행법상의 피해저감 대책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도서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 의제조치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기간 내에 의견미제출 시 협의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협의 절차가 형식적·의례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개편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연구 여건의 제공, 학·연 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6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 위원** 175항 정부가 발의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은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걸 법안 심사할 때 소위에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 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거론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법안 내용은 차치하고 우선 비용 추계입니다.

제가 이 비용 추계를 아주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낸 겁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윤석구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석탑강의상을 다섯 차례나 수상한 바가 있는 아주 공신력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3988억의 비용 추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비용 추계를 냈는데 보니까 1조 7000억이라고 내 봤어요.

뭐가 이렇게 네 배나 차이 나는가 했는데 보니까 콘크리트 사용량에 대해서 해체비용을 1㎡당 27만 6000원 정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비용 추계로 계산을 했는데 정부는 이 비용 추계가 52만 4000원, 거의 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내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도 가물막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게 비용 추계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정부 추산 철거비용 합계 보면 콘크리트 해체와 수문 철거비용은 어떻든 그건 해야 되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소수력발전소 철거, 양배수장 이설·보완, 취수시설, 하상유지공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저수호안 설치, 자전거도로 횡단 이것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등 보를 철거하는, 구조물의 철거비용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까지 포함을 다 시켜 봤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을 비용 추계를 내봤는데 이것 우리 의원실에서 낸 비용 추계하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법안소위 심의 때까지 이

비용 추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지요.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 법안소위에서 논란하다가 비용 추계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붙일다 볼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을 야기 시키는 비용 추계를 내봤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걱정하시고 발의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도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만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체비용 자체를 논의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부탁 드리는 것은 비용 추계가 너무 과다하고 불필요한 것까지 비용 추계 안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해서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추계해 놓은 것하고 네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정부도 비용 추계에서 1조 7000억을 내봤어요. 우리는 3988억 정도인데 4000억 하더라도 이게 네 배가 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필요 없는 것까지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계를 해서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35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인데요.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제정법입니다.

이건 해양연구원 구성원 90% 이상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원래 처음에 내놓았던 것도 교과부에서 소관 부서가 국토부로 바뀌었고 해양대·해양연구원·KMI를 통·폐합하는 안으로 내봤다가 관계 기관들이 극렬히 반대하자 해양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안으로 이게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거기에 내용을 좀 보면 제2조에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과학기술원법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와 있고요.

제8조에 보면 당연직 이사 제도 역시 다른 과학기술원법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르게 당연직 이사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

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당연직 이사를 규정해야 할 근거 규정도 본법에는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본법에 규정을 한다면 해양대학교 총장뿐만 아니라 국내 해양 관련 대학들 총장까지도 실제 당연직 이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예다가 부칙 제4조의 “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조항도 해양대학 총장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첨예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규성 예.

○강기갑 위원 소위원장님이 상임위의 지금 위원장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안소위 때 이것은 꼭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제정법이거든요. 저는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례조항들을 뒤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연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장관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해당 기관과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를 꼭 해서, 제정법인 만큼,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제가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예, 잘 알았습니다.

○강기갑 위원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KORDI가 2015년에 부산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 등과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실상 해양과학산업의 클러스터링을 촉진시킴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대학하고 연구원하고의 협력관계를 조금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초기 이사장은 해양대 총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위원 위원장님, 공청회는 꼭 한번 하도록 하시지요.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고요.

○위원장대리 최규성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이에요. 이게 기존에 일반적인 도정법에 사실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재정비 구역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붙어서 여러 구역이 큰 덩어리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촉진법,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차명진 위원 뒤의 것은 특별법이지요, 이 두가지가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뭉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뭉치면서 우리가 사고체계상 뭉치게 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법안에서 보면 형식상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이……

그런데 7조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 상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비구역이 예컨대 특정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여기서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 각 단계별로 사업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자동 효력 상실한다……

또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건 목적 달성이 어렵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체계상 혼란이 있어요. 뒤의 실장님도 이것을 봐 주셔야 되는데요.

29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실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비구역의 해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차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있던 7조하고 뚝 떨어져서 29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촉진지구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구역이

우리 소사만 치면 23개가 한꺼번에 진행되니까 너무나 커서 외부효과가 크니까 이것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승인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시·도지사나 광역시장이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하고 그 안에 구역도 또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정비사업이 되는, 특별하게…… 그런 경우였을 경우에 그렇게 해 놓고서 진행되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러면 투표로 해서 가부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투표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촉진정비사업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애당초 취지대로 7조하고 29조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법을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촉진지구도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한 부분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시의회에서 그냥 동의하면 통과가 되어 버렸는데 공람 조금 하고,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진지구나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나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똑같아졌어요, 새 법이요.

그렇다면 7조하고 29조처럼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로 해서 첫째는 3년 이상 해도 안 될 경우, 그다음에 둘째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 셋째는 시·도시사가 이것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되는데 어때요?

실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하시든가. 직접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법은 기존에 위원님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뉴타운이라고 속칭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너무 소구역 단위로 되면서 도시 전체의 조화나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구역은 크게 정하고 그 안에서 개발 방식이나 개발 시기나 절차는 좀 다양하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퇴출시킬 것은 쉽게 퇴출시키고 또 추진할 것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도 거치고 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미 관련해서 많은 법률안이 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제가 일응 듣기에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소위 심의 시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정부안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은 소위 심의 시에 전향적으로 받아들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명진 위원** 위원장님, 좀더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니까.

○**위원장대리 최규성** 몇 분이냐 더 하려고요?

○**차명진 위원** 한 3분.

○**위원장대리 최규성** 예, 더 하세요, 모처럼 오셨는데.

○**차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지금 취지로 법안 체계나 자구를 고쳐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 말씀입니다. 이미 정부가 위에서 지정해서 추진되어온 경우, 이게 특정하게 한시법이겠지요, 어디에다 좀…… 새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촉진지구, 지금 진행되는 촉진지구,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구와 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일정한 부분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귀책사유가 소위 말하면 시·도지사 등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법안에도 그게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경우에 한해서, 이미 오늘 이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진회의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내지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동안 합법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용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법안에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애당초 고시할 때는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가지고 행안부 등에서 반대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귀책사유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견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제정된 법에는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서 비용의 일부, 합법적인 것에 대한 보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얘기를 해서, 행정안전부는 과도하게 자치단체를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다만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에 관한 문제도 좀더 세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공포 후 1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최규성** 좀더 주세요.

○**차명진 위원**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포 후 1년 후에 실시해야 되지만 실제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뉴타운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빨리 우리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즉시 시행한다든가라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가능하지요, 법체계상? 어떻습니까,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행일은 하위법령 준비되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별 단계별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이거 지금 차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단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어제 수원시장께서, 수원은 뉴타운사업은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없고 재건축·재개발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를 좀 마련하겠다고 해서 어제 수원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업을 취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식적으로 조합이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적게는 한 3억에서 많게는 한 60억까지 이렇게, 22개 지역인데 22개 지역에서 그렇게 조합 자체에서 비용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일부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해제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제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원시 쪽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지금 정부안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 뉴타운하고 재건축·재개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수원시는 다행히도 뉴타운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재건축·재개발조합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데……

아까 차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칙에서 공포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가능한 1년보다는 좀 당겨서 시작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균 기반시설 지원비율이 한 32%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한 30% 이상 지원을 해 줘야 재건축·재개발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민민 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설립 시 동의요건을 수원 같은 데서는 4분의 3 해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80% 이상으로 강화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에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를 하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규정을 좀 강화를 시켜서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조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법안을 보고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이 내용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찬열 위원 그런데 75% 정도라는 것이 표현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상한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하한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75%를 만약에 상한으로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한을 규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하한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한을 50%면 50%, 60%면 60% 해서, 아니면 '75% 범위에서' 이러지 말고 75% 플러스 마이너스 5%라든지 10%라든지 이런 한계를 명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가뜰이나 임대주택 건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75% 상한으로 정해 놓으면 하한으로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지어도 된다는, 임대주택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가지고 하한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원이…… 수원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수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에서 요구하는 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좀 특성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정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훌륭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답변……

○이찬열 위원 그냥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75%가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임대주택 비율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부분은 저희가 75%를 상한으로 생각하고 하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를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레인지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비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 비용지원 문제는, 수원시나 특별한 지자체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도덕적인 해이를 발생시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치단체별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찬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건축조합에서의 비용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은 법안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75%를 상한선으로 정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하한을 정해 줘야지 아니, 임대주택 만드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한을 정해 주고 상한을 알아서 자치단체 특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상한을 정해 놓고 그것보다 더 하면 안 된다는…… 안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더 큰 의미로서 80%, 100%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극단적으로. 그렇다면 하한을 정해 줘야지 상한을 정해 줘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가지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조례로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정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상한을 정했으면 하나도 안 지어도 된다 그런 얘ियो?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위원장대리 최규성** 상한을 정하면 그런 거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게 아니고 하한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해 가지고, 상한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조원진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지역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치원 지역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주택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용은 크게 일반적인 지역에 적용되는 조항하고 공동주택 내 유치원에 관계되는 조항 두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유사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지역의 유치원에 특례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공유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동의 아무도 없이도 그냥 유치원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분할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8억 돈을 받았어요. 재래시장의 92% 동의를 받았어요. 도저히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를 한두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토지분할의 조건에 묶여 가지고 못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특례법안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박상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의 요건이 그렇게 높지, 3분의 2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요, 100%예요.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박상우** 100%입니까?

○**조원진 위원** 공유토지분할의 문제점이 공공이 쓰는 재래시장에 정부에서 28억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나왔는데, 전통시장. 그런데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동분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시켜 줘야, 이게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서 돈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92%를 받고도, 예를 들어서 100%를 받으려면 몇 백 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유부지가, 그러면 어떤 경우는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 경우는 못 찾는 경우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해도 그게 잘 안 먹히고요 어떤 경우는 '나는 임대만 받겠다'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특례법안을,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자금, 정부가 자금까지 줬는데도 92% 동의 받고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법안에 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부분들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이라든지 공공이 쓰는 공공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2004년부터 '06년간 풀었는데 한

번 이번에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이 안을 검토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항을 좀 넣어서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건을 좀 강화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예를 들면 80% 이상이든지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지 이런 조건을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특례법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세 차례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심의 때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례법을 세 차례한 게, 2004년~2006년 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번에 법안이 또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나온……

○**조원진 위원**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할 때 그런 안들을 좀 집어넣어서 전향적으로 폭을 좀 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조원진 위원** 사실 억울하잖아요. 92% 동의 받았는데 사람 못 찾는 경우가 몇 명 그다음에 반대하는 경우 몇 명 이래 가지고 못 하고 돈을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으로 해서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전체 다 동의하는데 한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도 소위 심의 시까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돈을 썼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조원진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할 때가 됐다, 미국의 레몬법인데, 아마 많은

자동차 생산자들이, 생산회사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차종에서 미국보다 한국의 찾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미국은 레몬법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발진 문제라든지 엔진에 결함이 있다든지 그리고 기어에 문제가 있다든지 큰 결함이 있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이 바쁜 사회에서 거기 회사하고 붙어서 싸움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아까 소비자법 얘기하는데 차가 거기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묶여 버리니까 자동차 관련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좀 가지고, 국토부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품에 대해서 엔진 그다음에 급발진, 급발진은 명확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에 대한 그런 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급발진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발진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어에 중대 결함이 있다든지 이렇게 자동차를 다시 가지고 가서 쓸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수리만 몇 번 하면서 교환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레몬법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미국은 이진아웃이거든요. 한번 해 보고 두 번째 생기면 바로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화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국토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국토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동차사들한테 팔기만 팔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소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토부하고 보험회사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웬만한 부분은 다 들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들 쪽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방법은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고려해야 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제도도 봐야 되고 정부가…… 결국은 이게 사인 간의 문제인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 사인 간의 문제에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원진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예.

○**조원진 위원** 사인 간의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 국회의 역할은 약자의 편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해를 합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그 약자들이 호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거나 받으라는 게 아니지요. 규정을 저마다 엔진 문제, 급발진 이런 것 딱 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보힘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차명진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최규성** 또 1분만?

1분 주세요, 차명진 위원님!

○**차명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입니다. 제29조에서 없어진 조항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시도 조례에 따른 비용 일부 보전 문제, 이것은 조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추진지구의 정비구역이 된 곳에만 한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런 재정비가 아니라 그것에

한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조항도 고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鴻俊 委員**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원진 위원께서도 하시던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한시법으로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7만 3000필지에 대해서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후속조치나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여튼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安鴻俊 委員** 실제로 지난 세 차례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했는데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진행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安鴻俊 委員** 원래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등기상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많은데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원을 통과하지 않고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현재 공유토지요?

○**安鴻俊 委員** 예, 현재의 공유토지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해서 오랫동안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安鴻俊 委員**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신속하게 간편한 절차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없이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법안에 비용추계서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심사되어 이번 정기회에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탁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본 법안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전에 확정이 된다면 일단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安鴻俊 委員** 예산 반영 없이 국가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인사……

○**安鴻俊 委員** 위원회 구성이 아마 이 법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객관성을 띠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鴻俊 委員** 예산 반영이 되어야 위원회도 구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회 그 자체는……

○**安鴻俊 委員** 큰 예산은 아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安鴻俊 委員** 이번 법안은 과거와 달리 공유토지 분할과 함께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부지의 공동소유로 인해서 적극적인 부지활용에 제한을 받는다 해서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제정안과 같이 규정한다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원이나 또 상가 등 기타 다른 부대시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는 다, 유치원 용지

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 용도별로 다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말씀 주신 그런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소위 심의 시에 충분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安鴻俊 委員** 현재 공유토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도 사례분석을 통해서 소위 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강기갑 위원** 2분만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규성** 그래요. 더 하세요.

그러면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 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이것은 그냥 소위 쪽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러는데 장관님,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226호 안인데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 무역항 가운데 어항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항만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는 지역구 삼천포항인데요, 올 7월에 고시된 3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삼천포 구항의 경우에는 어선 전용부두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항구로 지정된 항만구역에 여러 가지 어업지원 시설들의 설치를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 항만구역에 어업지원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도 좀 있고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요. 수협은 이런 어업지원시설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면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지원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면제를 못 받아서 제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지자체가 이런 사용료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장관님, 제대로 이것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문제 세세한 내용

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우리 물류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주성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지자체나 수협의 경우에는 저희 현행법상 공공용·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촌계에서 항만시설 사용할 때 면제해 달라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해 본 결과는 어촌계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조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어촌계가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주성호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사용료 면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위에서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장관님, 법안 맨 마지막 것 해양과학기술원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조항을 지금 간추린 것이 안 와 가지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초대 이사장이 해양대학 총장으로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부산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립대학이 3개거든요, 부산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대학 부경대학 한국해양대학, 그런데 부경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수산대학하고 부산공업대학하고 합병을 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쪽이 또 해양 분야가 굉장히 썩니다. 그런데 시작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우수한 국립대학 3개가 뭉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클 텐데 이 법안은 거의 한국해양대학에 귀속된 어떤 기술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해양대학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리고 겸직도 한국해양대 교수들만 겸직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해양정책국장 연영진 해양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초기단계에서는 해양대하고 겸직만 허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장관님하고 교과부장관님 그다음에 부산시장이 같이 상의하셔서 현지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부산지역 국립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3개 국립대학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요?

○국토해양부해양정책국장 연영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제정 목적은 해양 관련 국립대와 해양연구소의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 겸직이다 풀어졌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사장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저희는 앞으로 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 부분은 운영……

○장제원 위원 그런데 법안에 초대 이사장은 한국해양대학 총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부경대학은 명시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법안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컨대 국립대 총장들이 당연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 안에서 호선이 일어나야지 한국해양대 총장이 이사장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부산에서 가장 큰 대학인 부산대학 총장이 부산을 상징하는 총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기술원에 가면 이상하게 한국해양대학 총장이 마치, 사실 한국해양대라는 것은 한국해양대학도 중요한 대학이고 아주 좋은 대학이지만 해기사 양성을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대학이고 실제로 수산대학에 부경대학, 부경대학 편을 드는 것이 아니

라 내용적으로 단과대학이나 교수 숫자나 과목이나 그다음에 학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부경대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질의 교수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수정을 해 가지고 해양과학기술원법을 만들면 이 3개의 국립대학들이 총의를, 정말로 한국해양기술을 위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교육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해양과학기술의 메카로 부산지역을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가 같이 논의할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범할 때 3개 대학의 총장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합의가 잘되어 가고 상당기간 동안 또 그것이 지속이 되고 한다는 것이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칫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저희 판단은 일단 초기에는 당초에 해양대하고 통합하는 것을 죽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해양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거버넌스 체제를 다시 보더라도, 잘못하면 초기부터 너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그런 우려를……

○장제원 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부산시하고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나름 공감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말씀에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에 있는, 정서적으로 국립대학 총장분들이 굉장히 또 가깝고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문제는 말이지요, 해양대 출신 동문들, 부산대 출신 동문들, 부경대 출신 동문들, 부경대 출신 중에서도 수산대학 출신 동문들 이런 분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그것 교과부로서도 다른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래서 법안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첨가되어서 반영해서 법안심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성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 법안들은 이미 의결한 바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권도엽 장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장기갑	장기정	권선택	김기현
김성태	김진애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변웅전	송광호	안홍준
이인제	이한성	이찬열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조원진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청가 위원(1인)

허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	박수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제1차관	한만희	
제2차관	김희국	
주택토지실장	박상우	
물류항만실장	주성호	
해양정책국장	연영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심명필	
해양경찰청장	모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송 기 섭

## 【보고사항】

##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안상수	차명진	한나라당	2011.11.15

## ○의안 회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11. 8 장제원·노철래·이한성·정동영·장세환·현기환·이은재·이정현·신건·권성동·송훈석·이종걸 의원 발의)

11월 9일 회부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현기환·서병수·유기준·권영진·유재중·장제원·김세연·정의화·허원제·강길부·김무성·허태열·이주영 의원 발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장병완·유선호·조정식·박주선·김재윤·전혜숙·강기정·최종원·전병헌·강창일·양승조·이종걸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1일 회부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1 이미경·김부겸·김상희·김성순·김진애·문학진·박영선·백원우·백재현·안민석·원혜영·이용섭·이종걸·이찬열·전병헌·정장선·조정식·추미애·최규성·최규식·홍영표 의원 발의)

##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11. 11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 ○의안 반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반려됨

## ○의안 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이미경·김영록·최재성·송민순·이찬열·박지원·박우순·노영민·안규백·강창일·정범구·추미애·최영희·김진애·장병완·김충조·홍영표·김상희·김성근·오제세·김재윤·전혜숙·박은수·이용섭·조배숙·유선호·홍희덕·강기갑 의원 발의)

11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